

국제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규정

1999. 2. 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5조(국제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학술단체 가입 및 국제학술회의 유치)

본 학회가 국제학술단체에 가입하거나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조직위원회)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할 경우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직위원회 임원)

조직위원장의 임·면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의결하고 조직위원은 조직위원장이 선임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사무국 운영)

1. 조직위원장은 진행상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학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은 학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독립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나, 행사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행사결과 및 예산집행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모든 행사관계 서류를 본 학회 사무국에 이관한 후 해산한다.